####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



[시행 2022. 8. 29.] [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63호, 2022. 8. 29., 폐지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(위해예방정책과), 043-719-1725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4조제6항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27조제2항,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) ①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,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③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④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.
- **제3조(전문위원회의 운영)**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이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정책위원회"는 "전문위원회"로 본다.
  -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④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각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**제4조(위해성평가의 방법 등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자료 등의 제한이 있거나 신속한 위해성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·외 위 해성평가 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.
  - 2.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인체적용제품의 섭취, 사용 등에 따라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 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.
- 4. 인체의 위해요소 노출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.
- 5. 특정집단에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집단 및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화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위해지수, 안전역 등으로 표현하고 국내·외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하여 최종 판단한다.
- ③ 미생물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미생물 생육 예측 모델 결과값, 용량-반응 모델 결과값 등을 이용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영향 발생 가능성 등을 최종 판단한다.
- 제5조(독성시험의 방법 등) 독성시험은 「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(OECD)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독성시험의 절차·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- 1. 독성시험 대상물질의 특성,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독성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선정한다.
  - 2. 독성시험 절차는 「비임상시험관리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에 따라 수행한다.
  - 3. 독성시험 결과에 대한 독성병리 전문가 등의 검증을 수행한다.
- 제6조(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) ① 법 제10조제1항,「식품위생법」제15조,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68조,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33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부서(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)의 장은 평가 결과와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한다
  - ② 제1항의 위해성평가 수행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(식품 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)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세부지침의 제정·운영)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해성평가 수행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할수 있다.
- 제8조(재검토기한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2-63호,2022.8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**제3조**(화장품 위해성평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후의 화장품법령에 따른 화장품 위해성평가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별도의 고시 제정시까지 종전의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적용한다.

[별지 1]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[별지 2] 직무윤리 서약서 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<u>신 설</u>>

# 직무윤리 사전진단서

연번	진 단 내 용	체크사항	
1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 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 ( )
2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·검토 대상 안건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( )	아니오
3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 )	아니오
4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 )	아니오 ( )
5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 )	아니오 ( )
6	정책위원회 또는 전문회원회의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검 토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 )	아니오
7	1. ~ 6. 관련하여 현재는 진단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 나 향후 관련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그 이 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그 안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다.	예 ( )	아니오
※ 1~7번에 '예' 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	년 월 일		
	소속 : 직위 : 성명 : (서명)		

297mm×210mm[백상지 80g/m²]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<<u>신 설</u>>

## 직무윤리 서약서

상기 본인은 위해성평가 \_\_\_\_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  - ※ 다만,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- 2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5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수행 시「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(제척사유)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

#### ※ 제척사유

- 1)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
- 2)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)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)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)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·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
- 6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 체 취업행위 금지
- 7.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 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8. 그 밖에 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 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서 약 자 직위: 위원회 위원

성명: (서명)

#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